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이상식・어기구・박지원

정진욱 • 민형배 • 이병진

윤준병 • 이재관 • 박홍배

이언주 · 손명수 · 염태영

장경태 · 박해철 · 부승찬

김재원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, 추가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어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.

그런데 미국, 일본 등 경쟁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이 구축 될 토지 및 건축물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 는데 반해 우리 현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경쟁국은 대비 투 자금 조달 및 원가경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 및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.

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&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

R&D부터 상업화,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·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됨.

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,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,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추 가공제의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 등)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함(제24조제1항제1호나목).
- 나.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(제24조제1항제2호가목).
- 다.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 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, 추가공제의 공제율을 10%로 상향함 (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호가목 또는 나목"을 "제1호 각 목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과세연도에"를 "과세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2) 중 "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"을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장비"라 한다)"로, "2024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"을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"을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장비"로, "100분의 4"를 "100분의 10"으로 한다.

나.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의 토 지 및 건축물에 해당하는 자산

제121조의26제1항제2호 중 "제1호가목 또는 나목"을 "제1호 각 목"으

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장비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---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1호 각 목-----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속하는 과세연도까지-----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. 1. 공제대상 자산 1. -----가. (생략) 가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나.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

2.

나. (생략)

- 2. 공제금액
 - 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분의 5, 중소기업은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 - 1) (생략)
 - 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이로 정하는 시설(이 하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15(중소기업은 100분의 25)에 상당하는 금

로	정칭	하는	시설(ㅇ	하	0]
조여	게서	"국기	-전략기	[술시	- - 업
화/	시설'	'이라	한다)	의 토	티지
및	건축	후물에	해당さ	하는	 자
<u>산</u>					
(7	님 체	1]. 早. 5	カーフトウ.	.)	

<u>다.</u> (연행 나목과 같음)

7ት
-,

- 1) (현행과 같음)
- 2)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 설 및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 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비(이하 이 조에 서 "국가전략기술연구개 발장비"라 한다)--2030년 12월 31일-----

액

나. 추가공제 금액: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 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의 3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한도로 한다.

3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제121조의26(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재편계획"이라 한다)에

-					
-			_		
나					
	<u>국</u> フ	·전략>	기술시	업화	시
<u>설</u>	. 및 그	구가전	략기술	연구.	개
<u>발</u>	장비-		- <u>100</u> -	분의 :	<u>10</u>
			·		
			·		
3. (현형	행과 길	: 음)			
② ~	⑤ (현	행과	같음)		
제121조의	126(내	국법인]의	금융	채
무 상혹	한 및	투자를	를 위한	한 자	산
매각에	대한	과세특	투례)	1	

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양도차익상당액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 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 다는 내용
- ② ~ ⑤ (생 략)

,
1. (현행과 같음)
2
<u>제1호 각 목</u>
② ~ ⑤ (현행과 같음)